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9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5. 15.
3. 회 부 일 : 2026. 5.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중심으로 정치자금의 수수와 사용을 규율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천이나 선거전략 및 정책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배우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김건희 여사의 재판과정에서 보듯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경우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해 우회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누구든지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u> 제33조의2(선출직공직자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하 “선출직공직자등”이라 한다)의 배우자는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그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③ (생략)	<u>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한 자와 같은 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그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u> ③ (현행과 같음)
---	---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임.¹⁾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되고, 이중 후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의미함.²⁾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2024.5., p.5.

2)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방선거 후보자 등 법으로 정하는 선출직공직자와 그 후보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고,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³⁾

또한 후원회의 모금 한도 및 기부자의 기부금액 제한을 두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용 금융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모금과 그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를 대가로 한 각종 비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3) **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 ① 후원회는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한다.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다.

《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및 후원회의 평상시 연간 모금한도액 》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구 분		기부한도액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	시·도의회의원 후원회 시·도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	200만원
	구·시·군의회의원 후원회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	100만원
후원회의 평상시 연간 모금한도액		
구 분	모금·기부한도액	
시·도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후보자등	각각 5,000만원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시·도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는 합하여)	
구·시·군의회의원 및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등	각각 3,000만원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는 합하여)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시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시·도의회의원의 후원회와 구·시·군의회의원의 후원회는 평상시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까지 모금할 수 있음(각 1억원 6천만원).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의 책 p.15.내용을 참고하여 재가공

그런데,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선출직공직자들의 배우자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수수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선출직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⁴⁾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선출직공직자의 배우자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법상 규제들을 우회하여 그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4) 대법원은 2021다309484 구상금 판결에서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여론조사 서비스 무상 제공 사례의 경우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선출직 공직자 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시설·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및 서비스 제공이 공직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다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봄.

또한 안 제31조제3항의 신설을 통해 직접적인 금품의 제공 외에 서비스 등의 무상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현행법의 규정을 우회하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려는데, 배우자의 특정 금품 수수 행위가 정치자금인지 사적인 친분에 의한 선물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모든 금품 수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공직자 본인도 아닌 그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⁵⁾⁶⁾

또한 안 제45조제2항제7호는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실제 금품 등을 기부받는 행위뿐 아니라 그에 대한 요구, 약속 및 의사표시까지를

5) 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이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 금지 금품의 범위와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사교적 필요에 의한 금품 수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장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법 제45조제1항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⁷⁾ 개정안에 따를 경우 본인보다 배우자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법 제45조제1항및제2항제7호의 내용 》

구분	법 제45조제1항	안 제45조제2항제7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처벌대상	-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선출직공직자등 배우자의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규정(안 제33조의2)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요구하거나 기부받기로 약속한 자와 선출직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그 기부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안 제31조제3항이 금품·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대여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금지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법 제3조제2호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 신설을 통해 규정할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7)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과 그 정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입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선출직공직자등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율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의 목적 및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 제45조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안 제45조제2항 및 안 제33조의2는 선출직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기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부의 요구, 약속 및 의사표시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한 주체별 제재 체계의 통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법 제3조에서 이미 ‘기부’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금품·시설·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 및 대여를 금지하는 안 제31조제3항과의 체계적인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